

1. 개정이유

핏트를 이용한 자동차검사 시에 발생하는 일부 시야가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차검사 시설기준에서 핏트와 리프트 중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검사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리프트 검사 도입(안 별표 2)

- 1) 현재는 자동차검사 시설기준에 핏트만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핏트를 이용한 자동차 하부 검사시에는 시야가림 또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핏트와 리프트 중 선택적으로 설치토록 허용함으로써 정확한 하부검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환경부령 제 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종합검사 시설기준

구 분		설 치 기 준	
		종합검사대행자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
검사업무의 범위		모든 자동차에 대한 종합검사 (자동차종합정비업자는 차령이 6년을 초과한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와 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종합검사
검사 진로 (피트 또는 리프트)	통합형 (길이×너비×높이)	피트: 20m×5m×4m 이상 리프트: 19m×5m×4m 이상	피트: 14m×4m×2.5m 이상 리프트: 13m×4m×4m 이상
	분리형 (길이×너비×높이)	피트: 13m×5m×4m 이상 리프트: 12m×5m×4m 이상	피트: 9m×4m×2.5m 이상 리프트: 8m×4m×4m 이상
	피 트 (길이×너비×높이)	8m×0.8m×1.5m 이상	5m×0.75m×1.5m 이상
	리프트 (길이×너비× 상승높이×용량)	4m×2m×1.5m×4,000kgf 이상	4m×2m×1.5m×4,000kgf 이상
	구 성	1) 자동차 진입과 진출이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1) 자동차 진입과 진출이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구조

		구조여야 한다. 2) 차대동력계 중심축과 피트 진출방향 끝 부분과의 간격은 6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3) 검사진로의 바닥은 차대동력계 중심축으로부터 전·후 8m 이상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 4) 눈·비 등에도 지장을 받지 않고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여야 한다. 2) 차대동력계 중심축과 피트 진출방향 끝 부분과의 간격은 4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3) 검사진로의 바닥은 차대동력계 중심축으로부터 전·후 5m 이상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 4) 눈·비 등에도 지장을 받지 않고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진입·진출로		1) 검사진로 입구부터 10m 이상의 여유공간을 확보하되 진입·진출로를 별도로 갖추어야 하며, 대형자동차의 진입·진출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안전검사 분야 분리형 진로는 연결자동차의 진입·진출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 검사진로 입구부터 6m 이상의 여유공간을 확보하되 진입·진출로를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2) 안전검사 분야 분리형 진로는 연결자동차의 진입·진출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비고

1. 통합형은 1개의 검사진로에 모든 검사기기를 배열하는 방식이며, 분리형은 자동차안전 분야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로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검사진로를 구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2. 피트 또는 리프트는 차대동력계 검사 전에 반드시 관능 및 기능검사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분리형인 경우는 자동차안전 분야 또는 자동차 배출 가스 정밀검사 분야 진로 중 한 곳에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안전 분야 진로에만 피트 또는 리프트를 설치한 경우 배출가스 검사(재검사를 포함한다) 수행 전 피트 또는 리프트 위에서 촬영용 카메라로 촬영된 사진에 검사일, 시간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3.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진로는 1개 진로로 한정한다. 이 경우 분리형은 1개

진로로 본다.

4. 리프트는 자동차의 진입·진출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5.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리프트를 설치하여 모든 자동차를 검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리프트와 함께 피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검사진로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로 허가받아 사용 승인된 건축물이어야 한다.
7. 위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검사시설의 기준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및 별표 18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